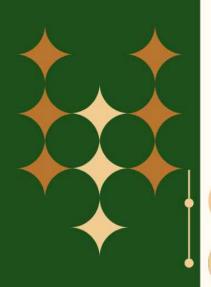
2024학년도 봉서초등학교 학부모 연수 자료



학부모와 함께 하면 봉서교육 맑음





차례

- **8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 **02** 2022 개정교육과정 안내
- 03 학교폭력예방교육
- 04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 05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 86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
- 07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 영웅 양성 평등 교육
- **89** 흡연 예방 교육
- 10 교권보호교육육
- 11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12 2024학년도 평가 안내
- 13 정보통신 윤리 교육
- 14 장애 인식 개선(인권)교육

선행학습 금지와 공교육 정상화 안내

가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나 선행학습의 문제점

- 선행학습: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초등 주당 사교육참여시간 7.4시간,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52.4만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 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을 초래하여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라 공교육정상화법, 무엇을 규제하나요?

시행 단위	규제 대상		규제 범위	
	11 m = 0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선행교육 (교육과정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초·중·	면성·운영)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고등 학교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가)	교과 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7.22			각종 교내대회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 예정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대학교	대학별 고사 응시학생 •고등학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라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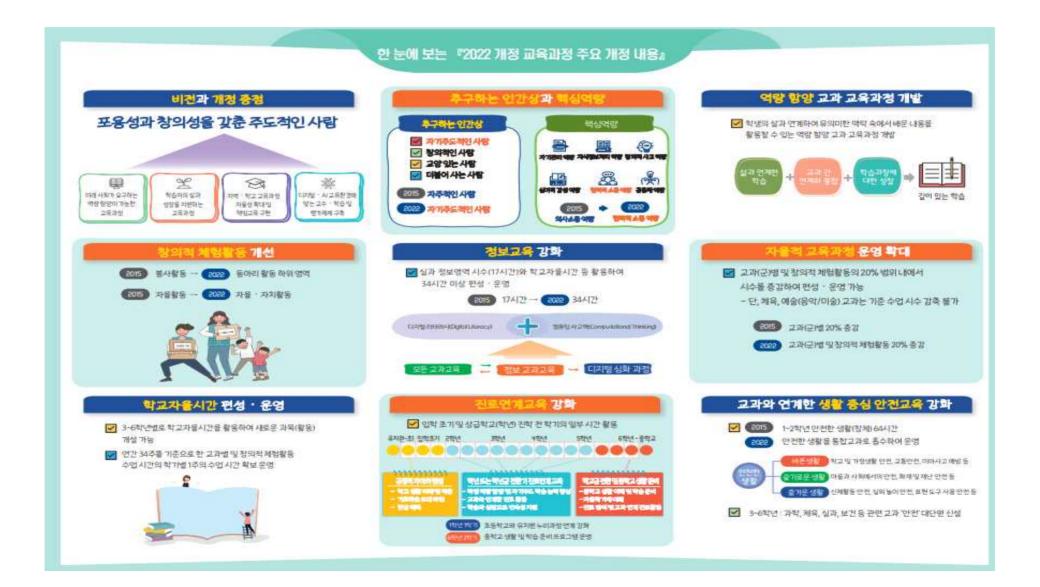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 점검시기: 학기별 1회 이상
-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1,2학년 영어는 예외)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마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 ▲ 공교육정상화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 Q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 A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Q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 A 초등학교는 학년군을 앞서서,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을 앞서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한 후에는 계획된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기나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Q 교과 간 혹은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 A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안내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1~2학년) 주요 개정 내용

2022 개정 교육과정 1~2학년 시간 배당 기준 변화

(2015 개정교육과정)				(2022개정 교육과정)		
· 7	분	1~2학년		1~2학년	비교	주요 변화 내용
	국어	448	1	482	+34시간	한글 해독 지원
	수학	256		256	-	변화없음
	바른 생활	128		144	+16시간	안전 🌞 비생
	슬기로운 생활	192		224	+32시간	안전 수술생
교과(군)	즐거운 생활	384		400	+16시간	안진 > 출생
	소계	1,408		1,506	+98시간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창의적 체험활동		336	TO STATE OF THE ST	238	-98시간	
학년군별총수업시간수 1,744				1,744		

1-2학년 교육과정 세계화

1학년 입학 초기 적응활동과 교과 교육과정 중복 개선

증거운생활교과의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

고경 국어교과 시수(34시간) 확대 → 한글 해독 교육 강조





입학 초기 적용 활동 운영 개선

- 기존 통합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중복 문제 개선
- 입학초기 한글해득 34시간 중배



안전한 생활을 통한교과로 흡수

통합교과 전체 주제 단원에서 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리트 가장 창체 내 안전한 생활 64시간 별도 편성·문영

2022개정 통합교과에서 안전한 생활(64시간) 포함하여 운영 (비생 16시간, 술생 32시간, 출생 16시간)

1-2학년실내 · 외늘이 및 신체활동 함화

- 즐거운 생활의 성격을 늘이 경험 중심 교과로 개편
- 즐거운 생활 교과의 실내 외 놀이 및 신체활동 강화



(REPLEN) 80시간 > (REPLEN) 128시간

국어파 교육과경 개경 증정

- 역량:비판적 창의적 사고, 디지털 미디어, 의사소돔, 공동체 대인 관계, 문화향유, 자기성찰 개발
- ☑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매제
- ☑ 주요개정사항(1~2학년)
 - 초등 1~2학년 국어 34시간 증배
 - · 한글 교육 시기를 구체적으로 안내(3월 중, 입학초기)
 - + 기초 문해력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내용 체계 하위 범주 설정(읽기, 쓰기, 문법 영역)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증정

- ♥ 역량: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처리
- ☑ 영역: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
- 주요개정사항(1~2학년)
 - 학생들의 한글 학습 정도를 고려한 학습 내용 선정
 - · 등호,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명시
 - 규칙을 찾고 만드는 활동에서 학생의 주도적 학습 강조
 - 구체물의 길이를 '약'으로 표현하기 관련 내용 악화
 - · 오각형, 육각형 관련 성취기준 수정 및 부분 삭제

통합교과 교육과장의 개정 중점

- ☞ 역량: 지금-여기-우리 삶을 살아가는 항
- 영역: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 주요 개정 사항
 - 주제 개발권의 현장 이양
 - 입학 초기 적응 활동 흡수 + 연계 강화
 - 안전한 생활 통합
 - 신체활동 및 놀이활동 강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이해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 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갓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빵 셔틀, 과제 대형, 게임 대형, 신부록 강요 등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신체폭력

신체를 손, 발로 때리기, 장난을 빙자한 꼬집 기, 힘껏 밀치기,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려 가는 행위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 으로 배제하는 행위
-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건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행위 -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으로
- 겁을 주는 행위



- 폭행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 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전촉 등)으로 상대방이 성 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귽풍갈취(공갈)

- 돈, 옷, 문구류 등을 요구하거나 빌리고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사이버 폭력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 적인 심부름, 성폭력 및 따돌림 등의 행위

학교폭력 이해 시 중요 사항

- ▶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의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학생부 기록, 관리 강화 (최대 2년 → 최대 4년)
- 조치사항 대입반영 확대 (학생부 위주 전형 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
- 즉시 분리기간 연장 (3일 → 7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가. 내 자녀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나.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 관계를 파악합니다.
- 다.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존중, 역지사지, 준법의식 등을 인식시킵니다.
- 라. 자녀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장난이라도 약자에게는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교육합니다.
- 마. 자녀에게 **모범적인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아이들 앞에서 부모

- 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자녀에게 친구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고자 할 때, 잘못된 일임을 친구에게 알리도록 지도하고, 잘못된 친구의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친구 간의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5 학교폭력 피해를 알았을 때 대처요령

- 가. 자녀가 폭력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등께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나. 폭력피해가 우려되는 자녀에게는 동반자를 만들어 주고, 등하교 시 가급적 **큰길**을 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부모님과 동행**하도록 합니다.
- 다.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와 협의하여 **공동지도** 하도록 합니다.
- 라.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았을 때는 바로 부모님, 선생님께 알리도록 자녀에게 지도하며, 그것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는 길**과 같음을 알려줍니다.
- 마.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생활지도 및 태도 개선을 위해 힘씁니다.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에서의 실천 5계명

- 가. 아이에게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 나. 평소 가정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다. 아이의 학교 생활과 또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화합니다.
- 라. 아이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사회적 상황파악 능력과 대처능력(거절, 인사, 대화참여, 감정표현/조절)을 알려줍니다.
- 마.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지지자(보호자, 교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6 학교폭력 신고방법

가. 교내 신고 방법

- (직접 신고·상담)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담임교사에게 상담 및 신고
- (학교 교무실) 063-261-6659 (신고함) 교내 비치된 학교폭력 신고함

나. 교외 신고 방법

-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 국번 없이 117 및 117센터에 방문 신고·상담
-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범죄 신고 11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이해

1 아동학대의 개념

가. **아동**이란?

<u>만 18세 미만의 사람</u>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 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 가정폭력 피해자가 만 18세 이상의 경우는 가정폭력 관련법이 적용되고, 만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법에 적용되어 처리
- 나.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아동학대범죄'란?(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 ▶ (형법)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 (아동복지법)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내용

- 가.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나.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 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 라. (방임 및 유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아동학대 신고

가.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흐름도

신고전화 → 112(경찰) • 피해아동 현재상황/인적사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학대행위자 관련 사항 • 신고자 관련 사항 • 안동학대 의심사항

나. 아동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고 500만원 이 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다.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기관

- 국번 없이 112(전화, 문자)
-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063-241-1391
- 모바일앱(아이지킴콜 앱)
- 보건복지콜센터 129-6번(아동학대 상담)
- * 경찰청으로 신고된 사안(교사 대상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청 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절차 시행
-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 등이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 확인
- (시교육청) 교사 대상 아동학대 사안 관련 교육감 의견서(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작성 후, 수사기관에 제출

4 징계권 폐지 안내

가. 징계권이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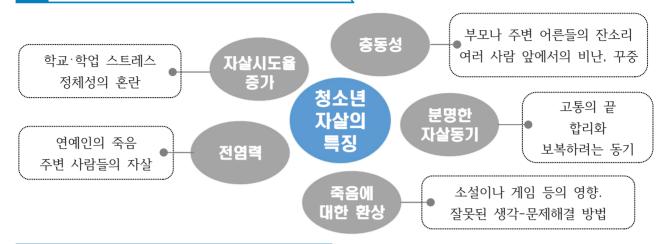
나. 징계권 폐지 시기

2021년 1월 26일에 폐지되었습니다.

※ 아동은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체벌은 더 이상 훈육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학생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

청소년 자살의 특징



자살예고 징후

- 줄, 칼 등을 준비하고 감춤
- 수면, 진통제, 감기약 등을 모아서 감춰둠

행동 신호

-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나 선생님을 찾아감
- 일기장, 낙서, 블로그, SNS 등으로 자살, 죽음에 대해 표현
-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의미 있는 소장품을 남에게 주거나 버림
- 나 정말 죽고 싶어
- 내가 죽어버리면 좋을텐데…

언어 신호

-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사라져 줄게
- 멀리 떠나고 싶다
- 깨어나지 말았으면…
- 날아가버리고 싶다
-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지?
- 갑작스러운 행동변화

- 흥미와 에너지의 저하
- 사람들과 만남을 끊고 혼자 지내려 함 감정기복이 심해짐

기타 신호

- 식욕과 수면습관의 변화
- 외모와 위생 상태에 대한 관심의 결여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무단결석이 많아짐
- 위험한 행동이 증가함

3 자살방지를 위한 노력 및 방법

가. 자살예방 대처방법(가정)

- ■자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자살에 대한 생각, 시도, 방법 등).
- ■자살에 대한 생각과 삶을 지속할 이유 등 자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 ■논쟁이나 비판이나 충고, 설교, 조언은 하지마세요.
- ■부모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세요.
- ■말과 몸짓으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세요(힘든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이나 몸은 자녀를 향해 주세요).
- ■자녀의 감정을 공감해주세요.
- ■자살 이외의 어려움을 해결할 여러 대안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 ■자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으세요.
- ■곁에 머물러 주세요(자살은 충동적이므로 잠깐 고개를 돌린 순간에도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요청하세요(자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청소년 생명존중(자살예방) 7계명

- ■진심어린 사랑으로 학생을 대한다.
- ■학생의 장점과 강점을 부각시킨다.
- ■학생과의 면담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
- ■학생의 말을 잘 경청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한다.
- ■학생지도 시 자존심 손상이나 인격적 모욕감이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학생의 친구들에게 조력을 구한다.
-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 전문가나 기관에 의뢰한다.

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명의 전화 (☎1588-9191, www.lifeline.or.kr)
-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www.suicideprevention.or.kr)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번없이 1388, www.kyci.or.kr)
- ⊃문자상담「다 들어줄 개」(☎1661-5004)

가정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

적절한 지식과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성교육은 자녀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1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

- 가. 성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 성에 대하여 엄격하며 금기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 나.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현실감각을 갖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다.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라. 딸이나 아들 모두 이성의 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마.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 바.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성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 아이들 질문 뒤에는 숨은 질문이 있습니다.
- 사.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아. 적절한 기회를 포착하여 성교육을 합니다.
- 자. 정확한 성 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 자신도 올바른 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 가장 좋은 성 교육자는 동성의 부모입니다.
- 차. 부부간에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 앞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 카.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 기관을 찾습니다.

2 성폭력에 대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동의 없이 발생하는 성적인 행위 모두를 말합니다.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길거리나 직장 등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 성기 노출은 물론, 어린이 성추행, 음란 전화 등 성적으로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음란 통신이나 포르노-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컴퓨터 게임, 음란 도서 등의 제작 판매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사이버 성폭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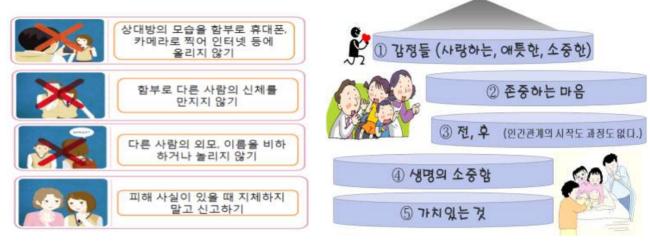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포함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성적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성희롱: 성적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음란 물, 음담패설, 음란전화)

성추행 :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신체 적인 접촉 (키스, 더듬기 등)

3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만지는 행동, 그리고 상대방의 몸에 대해 놀리는 등 수치심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음란물 등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영상, 사진 등을 보여주는 것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성 인권 행동 지침 ◀

▶ 성매매에는 없는 것 ◀

청소년 인터넷 음란물 중독 예방

음란물은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음란물에 빠지게 되면 점점 더 현실과 환상을 혼돈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게 되면서 무감각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에 물들어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음란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음란물을 모두 삭제하고 유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그린 I-Net www.greeninet.or.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공부방에 컴퓨터가 있다면 거실로 컴퓨터를 옮기세요.
- 하루 중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꼭 지키세요.

○ 음란물을 보는 아이들 '판별법'

- 부모 몰래 CD를 감춰 보관한다.
-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인터넷을 하는 경우가 잦다.
- 컴퓨터에 수록된 파일 가운데 확장자가 'GIF'나 'JPG' 등으로 끝나는 그래픽 파일이 많다.
- 신용카드 청구서에 알지 못하는 내용과 금액이 청구된다. 청구 업체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web. site' 등으로만 적혀 있는 경우 (음란물업체들은 회사명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음)
- 방으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컴퓨터를 끄거나 화면을 바꾸는 등 당황해한다.
- 아이가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걸 알았을 때는?

음란물은 우연히 접하지만 다음부터는 의도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기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다그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음란물이 왜 나쁜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성폭력 & 성매매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은 모두가 피해자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구분 없이 모두 피해 아동·청소 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 » 디지털성범죄 유형
- ① 불법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② 유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③ **소비** :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후 게시
- (몰래 찍은 후 온라인유포) -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
- 디지털 그루밍-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다양한 통제 및 조종기술을 사용하는 것 (주로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일어남)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게임 내 성적모욕)
- 유포협박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포협박)
- 재유포 및 제3자유포 (최초 유포 이후 2차유포)
- 사진 성적 합성 후 게시(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여 성적으로 이용)

3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들을 알려주세요

- 온라인상에서 누군가가 나의 몸 사진 혹은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나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려고 할 때
- ❷ 온라인상에서 나의 신체 사진을 누군가와 공유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협박받을 때
- ③ 누군가가 나에게 통화, 메시지 등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때
- ②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실제로 만나자고 계속 요구하고, 내가 그것에 압박감을 느낄 때
- **⑤** 누군가가 나에게 성관계에 대해 말하고 내가 불편함을 느낄 때
- **6**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요구할 때
 - →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누군가에게 개인정보(학교, 사는 곳, 메신저 ID)나 나의 사진/ 영상을 보내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주세요.



- 🗎 -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stopds)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 817-7959 (평일 10:00-17:00)
- ▶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5801 (평일 10:00-17:00)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으로 검색)
- ▶ 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가능)
 -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24시간 전화 상담) #1388 (24시간 문자·카카오톡 상담)

전문 기관 목록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1

자녀양육 교육에 있어서 아들, 딸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양성평등(兩性平等)이란,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특정 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 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생물학적 차이를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직결시키지 않으며,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 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2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평등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해 역할 분담이 되어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이며

- 가)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 나)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 다)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

상황/대화	분석	상황/대화	분석
"여자니까 바느질을 잘하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성차별	"손재주가 좋아서 바느질을 잘 하지."	개인차를 고려
"어딜 남편이 얘기하는데 말대 답이야?"	평등하지 못한 가족 문화	"따지는 듯한 말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다시 얘기해보자."	동등 한 입장에서 대 화

자녀 양육,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

3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합니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 진로, 학업 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 관념이 배제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딸들에 대해서는 예의 바른 행동과 여성스러운 행동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인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줍니다.



상황/대화	분석	상황/대화	분석	
"○○이는 치마 입었을 때가	여성스러움을 강요	"○○이는 독서 할 때 제일	행동, 노력에 대한	
제일 예뻐."		행복해 보여."	칭찬	
"가족끼린데 속옷 차림이 뭐	사춘기 자녀에게	옷차림/행동에서 서로 예의를	심리적으로 친밀한	
어때."	부담을 줄 수 있음	지킴	성숙한 가족	
"어떻게 했으면 이런 일을 당해?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 하겠어?"	침묵을 강요	"네 잘못이 아니야. 부끄러워 말이라. 같이 해결하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	

우리 자녀를 위한 흡연 예방 교육

1 아동에게 미치는 흡연의 영향

- 가.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정신적, 신체적 미성숙 상황에서 발암물질 및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성과 건강 위해의 심각성이 커집니다.
- 나. 청소년기 흡연자의 대다수가 성인기 흡연자로 이어지면서, 청소년 흡연자는 잠재적으로 성인 흡연자로서 나코틴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입니다.
- 다. 다른 약물 남용, 음주, 본드 흡입과 반사회적 행위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2 간접흡연과 3차 흡연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3 담배는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가. 청소년 흡연은 성인 흡연보다 나쁘다.
 - 청소년기는 키가 1년에 10cm까지 자랄 정도로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은 키뿐 아니라 폐를 비롯한 신체 장기 모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흡연은 담배의 유해 성분이 세포 깊숙이 침투하여 독성 작용이 더 크며 청소년기의 왕성한 세포분열을 방해하여 성장을 방해합니다.
- 나. 청소년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 심합니다.
 - 어린 나이에 흡연을 하면 니코틴에 노출되는 양이 많으므로 중독이 심해서 심리적인 의존도 가 높습니다.
- 다.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폐암 사망률이 성인에 비해 높습니다.
 - 15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25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한 사람보다 폐암 사망률이 18.7배나 높습니다.
- 라. 청소년 흡연은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어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 발달에도 해롭습니다.
 -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의 산소의 공급을 억제하여 뇌에서의 저산소 증을 가져와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 마. 청소년은 담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에 대한 해독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성인에 비해 약합니다.
- 바. 금단현상이 쉽게 나타나 담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4 금연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가.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시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 국가에서는 국민의 금연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 금연 상담 전화: 1544-9030
 - ☞ 2015년부터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가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 나.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다.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 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흡연 시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부착한 뒤 몇 시간~몇 달 장기간 재배출(3차 간접흡연)됩니다.
- 마. 가족과 함께 외식 시에는 금연 지정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바.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살펴주시고 금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전하되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자녀와의 의미 있는 대화시간을 가지세요. 청소년들에게는 그 어떤 금연운동보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5 전자담배의 유해성

전자 담배는 카트리지 속의 정제된 니코틴 용액을 초음파 또는 가열 기술을 사용하여 수증기로 무화(霧化)하기 때문에 기존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 물질 없이 순수한 니코틴만을 흡입할수 있도록 하게 되므로 전자 담배는 기존의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담배 제품의 위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잠재적 위험성이 있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가. 2008년 세계보건기구는, 전자 담배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니코틴 대체 요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으므로, 전자 담배를 적법한 금연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며,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나. 또한 흡연을 지속하면 할수록 니코틴의 효과가 점차 감소하여 더 많은 니코틴을 요구하게 되므로 흡연량은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자기 담배를 끊게 되면, **니코틴 중독의 영향으로 신체적** 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 금연구역 안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내 및 교문 10M 이내 흡연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교권보호 교육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란?

2019년 10월 17일부터 새롭게 적용되고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 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교원지위법(제18조, 제21조) 개정 주요 내용

영역	개정 주요 내용
교 육 활 동 침해 학생 조치 강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 피 해 교 원 보 호 조 치 비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 발함

4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이후 발행한 사안부터 적용

선생님은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u>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u>

5 함께 노력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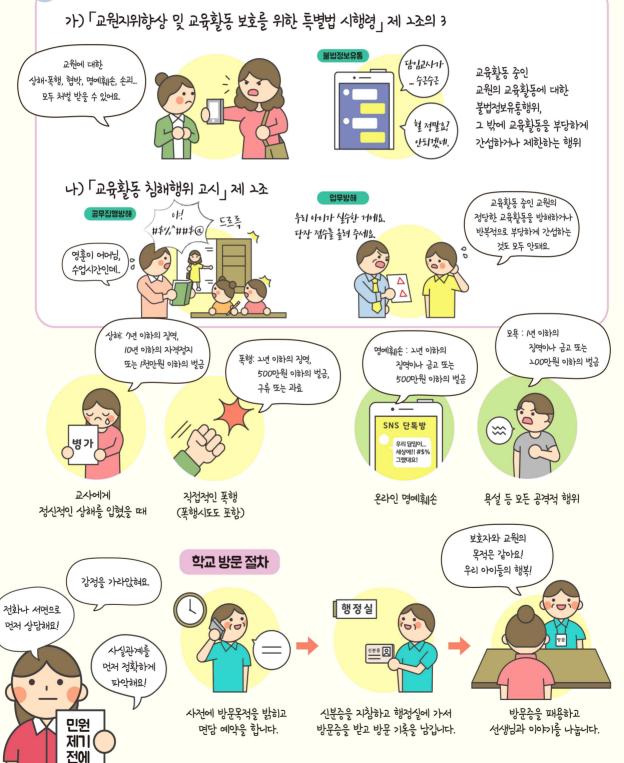
교육활동침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보호자용)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제학기 학부모가 일이야 할 청탁금지법

재녀의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실에서 축가를 불러도 청약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급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립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8조대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구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경우
- 지녀의 생일을 맞이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mark>한 친구들에게</mark> 간식이나 케이크를 보내는 경우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까리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

A. 네, 모두 가능합니다.

학생은 정타급지법상 '공작자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응원을 위해 간식동을 제공하거나 아린이집 · 유치원 자녀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역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급지법의 재한을 받지 않습니다.



제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답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 지도를 삼시작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 · 검조사비는 원활한 작무수행, 사교 ·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하용되지 않습니다.



계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학교에서 운동화에 참석한 지역주인이나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해도 첨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지역주인, 학부모는 창막당지법상 공작자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에서 운동화의 참석한 지역주인과 학부모여기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참작공자당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참석자 중에 공작자당이 있다 하다라도 학부모의 임원으로서 문동회 참석자 모두에게 일등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의 선물을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정 하당을 수 있습니다.



계학기 학부모가 알이야 할 청탁금지법

재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교 재녀와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고등하고만 하부모는 "공지자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시설명회에서 제공하는 다가와 흑보물을 받는 것은 청탁공자법의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역부모 중에 공직자동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임시설명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다가와 흥보물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정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청락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학부이를 판매한 수의금을 학교보수기급으로 기존하는 경우
- 학교회전기교으로 기존하는 경우 •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으로서 필급이나 시설수리비용을 학교에 가운하는 경우

A. 네, 모두 가능합니다.

'초 종통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병전기급을 조성 운동하는 경우 참작급지법 제8조제3함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어용되는 금융통에 현당됩니다.



제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교문암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참학급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간하여서는 급표용의 수수가 금지되다. 범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학교는 학부모위원에게 원활한 작무수행, 시고 열려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위원 이 취원식이나 시무식 중무식 등 작무수행의 공원성을 자해할 우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사원 심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문란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

A. 네, 관련법령 좌분 때론다면 가능합니다.

학교하육진통합 , "초충동교육법 ,에 따라 확고 추운공을 확고 회계에 폭명하게 판임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탁급치법 제8조례3항계8호의 다른 법명에 따라 하용되는 급용될데 해당됩니다. 단, 법명을 따르지 않고 급용들을 작한 처급하거나 운동부 지도자의 동상에 엄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이란이집 원장은 청탁급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국용합 아란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대성근목자 300명 예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예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아란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참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한간, 아란이집의 소속 구설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정확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다다.



계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목력자치위원회의 •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문업위원회(학교폭락자치위원회)의 위원대 되는 경우 참탁공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일부 규정(부정정학에 따른 작무수행 금지, 급통등의 수수금지 등)이 준용되고, 학부모의 본래 직접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 _ 유치원 선생님은 정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 참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참학급지법 제2조제1호관목에 따라 각급 학교로서 '공공자관'에 포함됩니다.

때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뿐만 아니라 유치왕의 교직원도 창탁급지법 적용[[삼입니다.





2024 봉서초등학교 학생평가 안내

학생평가는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를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학습 성과를 파악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서, 과정 중심의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져 미래를 살아갈 참학력과 삶의 역량을 기르는 초등학교의 전북형 평가제도입니다.

유형	시기	대상	평가 내용 및 방법	처리 및 활용	통지방법
진단 평가 (맞춤 항업 성취도 평가)	3월	2 -6 학년 (3,5,6학년)	* 평가교과 -2학년: 읽기+쓰기, 셈하기 -3학년: 문해력, 수리력 -4~6학년: 국어, 수학, 영어 * 평가방법(2~4학년): 선다형, 연결형 등 지필평가 (5~6학년): 노트북, 웨일북을 활용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 * 진단 및 학습 더딤 학생 파악	*출발점 행동진단 및 본 학년도의 지도 방 향 설정에 활용	* 학부모 상담 시 자료로 활용
형성 평가	상시	전교생	*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을 학년별 작성 * '학년, 학급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첨부 하여 수시로 평가 * 핵심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학급 및 학년 별 상시 평가 * 각 과목별 정의적 영역(가치, 태도)을 포 함하여 평가함 *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 실시 - 교과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수행평가 실시 (관찰, 토의, 구술, 실기, 포트폴리오, 논술형 등)	*3단계 성취수준 (잘함, 보통, 노력요함)처리 *학생의 자기점검 *평가 결과 누가기록 (쓰기책, 수학익힘 책, 실험관찰책, 글 쓰기공책, 학습장, 탐구보고서, 작품, 포트폴리오, 평가지 등) *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후속 지도 자료로 활용	*1학기 - 학기 말 가정통신 *2학기 - 학년 말 종합 정리하 여 가정통신
총괄 평가	7,12 월	4~6학년	* 평가교과: 국어, 수학, 영어 * 평가방법: 선다형, 단답형, 서·논술형 등 * 평가문항: 평가문항에 관한 사항은 학년 협의회에서 협의,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 준에 따른 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수의 문항을 출제하고 문항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구성 * 학기 말에 단원이나 교과가 끝난 후 여러 학습목표 도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실시(연 2회)	(A,B,C,D수준) 처리 *학생의 자기점검 *성취수준, 맞춤형 피드백 등을 포함한 평가 결과 제공 *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후속 지도 자	* 학기 말에 학 교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 가정통 신

정보통신윤리교육

1. 정보통신윤리교육이란?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 그리고 좋고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판단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 체계를 의미한다.

2. 올바른 인터넷 · 스마트폰 사용 지도 방법 5가지

- 1. 지나친 흥미·폭력적·유해 영상을 스스로 구분하여 멀리 하도록 지도한다.
- 2.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 공간과 같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지도한다.
 - 카카오톡, 문자, 게시판, 댓글 등을 포함하여 사이버 상에서 하는 모든 글과 행동은 기록되며 증빙 자료가 남는다. 아이에게 이를 설명해주며 혹여 나쁜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기록이 남는 사이버공간 상에서는 더욱 심각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을 알린다.
- 3.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사이버 공간에 올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올리도록 지도한다.
 - 내가 올린 사진이나 문구, 동영상 등을 주변 관계에 있는 친구, 이웃이 보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3회 (글을 작성하기 전, 글을 작성하면서, 올리기 버튼을 누르기 전) 이상 '이 글/ 사진/ 동영상을 올려도 괜찮을까'고려해 본 후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강조한다.
- 4. 아이의 학교 생활과 사이버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아이의 사이버 활동(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대하여 물어보고 평소 학교생활과 연계하여 확인해본다.
- 5.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 메일, 채팅은 열람 또는 답장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Youtube에서 청소년 유해정보 검색의 안전도를 높여주세요!

- ① 유튜브를 실행하여 오른쪽 상단의 ■, 자기이름을 클릭한다.
- ② 스마트폰 상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서브메뉴]-[설정]을 누른다.
- ③ 설정 란에서 [일반]을 누른다.
- ④ [제한모드]오른쪽으로 드래그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O&A

Δ

А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 스마트폰 과의존 아닌가요? 그런데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게 정확하게 뭐죠?

단순히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한다고 과의존이 아닙니다. 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 세 가지 영역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현저성: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 스마트폰이 옆에 없을 때 집중을 못하거나 스마트폰 생각이 사라지지 않음
- 조절실패: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
- 문제적 결과: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
- * 구체적인 진단은 스마트쉼센터(https://www.iapc.or.kr) 과익존 진단을 활용하기

스마트폰 사용 습관 때문에 나 또는 내 주위의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스마트폰 과의주!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좀 적당히 하라는 제 말을 듣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거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교육 방법은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 ①유·아동에 대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의 핵심은?
- 교육이 아닌 스마트폰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는 것**. 보호자가 유아동 앞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아야 합니다.
- ②초등학생에 대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의 핵심은?
- 사용 관리 앱 설치: 오늘의 스마트폰 사용 허용 시간대 설정, 유해 사이트 및 앱 차단, 사이버 폭력 의심 메시지 감시, 신용카드 자동결제 차단
- 게임에 대한 교육: 교육에 맞는 게임인지 이용등급 확인, 과도한 현질을 부추기는 사행성 요소확인, 놀이문화로서의 게임 인정, 게임만이 줄 수 있는 재미에 대한 교육
- 사이버 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상의 사진, 메시지는 삭제되지 않고 영원히 남음. 피해자의 아픔도 영원히 남는다는 사이버 폭력의 무서움을 인지하도록 해야 함.
- ③청소년에 대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의 핵심은?
- 청소년에게 '옳은 사람' 보다 '좋은 사람'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게임, 온라인 도박, 성폭력, 사이버 폭력에 대한 다른 청소년들의 피해 사례를 들려주고 "너를 많이 사랑하는 데,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인터넷, 게임 이용 관리: 그린아이넷 http://www.greeninet.or.kr 청소년 정보이용 안전망으로 홈페이지에서 설치파일을 다운 받으시거나 포털사이트 '그린아이 넷' 검색을 통해 다운 가능
-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 그린아이넷, 스마트보안관, 아이스마트키퍼 등
 - 청소년이 스마트폰에서 불법 유해정보(앱,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정보 및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용 SW.
 - 부모 스마트폰에 설치한 경우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앱·웹사이트 관리, 자녀 스마트폰 이용 통계 확인이 가능
 - 부모 및 자녀 스마트폰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T스토어, 올레마켓, 나스토어 등 오픈마 켓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 가능

학부모 장애인식개선 교육

	용어 일	[아보기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합	학급	특수학급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선정받는 장애 영역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청사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가 있으며 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의해 선정및 배치됩니다.	소속되어 있는 학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이 이루어지는 ♥통합교육이란 장애유형과 정도에 아하고 또래와 함	수교육대상자학생이 급으로 장애학생과 수업을 받는 통합 학급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따라 차별 받지 당께 개개인의 교육 교육을 받는 것을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 교에 설치된 학급을 알합니다. 특수 교육대상학생들은 어려움이 있는 교 과시간에 특수학급에서 개별화된 교 육을 받습니다.	
통합교육	실시할 경우	나타나는 균정	적인 변화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장애 표찰로 인한 부정적인 명향이 감소 연령에 적절한 의사소통기술, 사회성 기술, 일상생활 적응기술 증가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독을 넓힘 사회성, 인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 장애인에 대한 오해, 편견의 감소와 함께 이들을 		
3.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기회 확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 수용		

학교는 작은 예비사회입니다. 자녀가 학교 내에서 생활할 때 친구들에 대한 편견 없는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나와 다른 친구를 존중하고, 사이좋게 협력하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장애 학생을 대하는 에티켓

- 1. 장애인이란 말 대신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고, 자연스럽게 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2. 친구를 놀리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3. 무조건적인 도움은 친구의 자립심을 약하게 할 수 있어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지켜봐줄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4. 친구가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골바른 행동을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5. 나와 다른 친구의 모습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길러 주세요.

봉서초 사랑반 내선번호 070-4010-2788 (전화 가능) 개인번호 070-7954-0502 (전화, 문자 가능)

참, **꿈**, **힘** 을 키우는 **봉서초등학교**

